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 2016. 05.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토지매입 변경(안)

### 1.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거창군의회 2014년 제3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추가매입 토지 면적이 6천㎡ 이상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88고속도로 폐도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주차장 확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 부지매입.

### 2.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2015.1.1기준 공시지가, 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지적	편입				
계		17필지		16,350	17,918				
취 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476-19	도	54	54	4,950	2016 ~ 2017	주차장 조성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496	도	2,055	2,055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488-1	도	1,001	1,001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1138-8	도	1,742	1,742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394	도	6,310	6,310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1139-7	도	134	134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269-1	도	74	74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269	도	129	129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982-3	도	60	60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980-3	도	59	59	5,280			이근정외4
		거창읍 대평리 980-4	도	284	284	5,280			이근정외4
		거창읍 대평리 554-9	도	310	310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8	도	387	387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7	도	309	309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6	도	423	423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179-5	도	485	485	5,61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1	도	4,102	4,102	5,940	국토교통부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4. 지적도 및 위성사진 ⇨ “따로 붙임”

# 위치도 및 위성사진

## ■ 위치도



## ■ 위성사진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년월일 : 2016. 05.
제 안 자 : 거창군수

## ② 동동근린공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 1.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공원내 공설묘지 및 농경지 진입로가 없어 사유지를 거쳐 진입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와 잦은 분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함
- 거창읍 대동리 산53번지 1필지를 토지매입 후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이용편의 제공

### 2. 취득대산의 표시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산53	임	6,232	58,705	2016~ 2018	도로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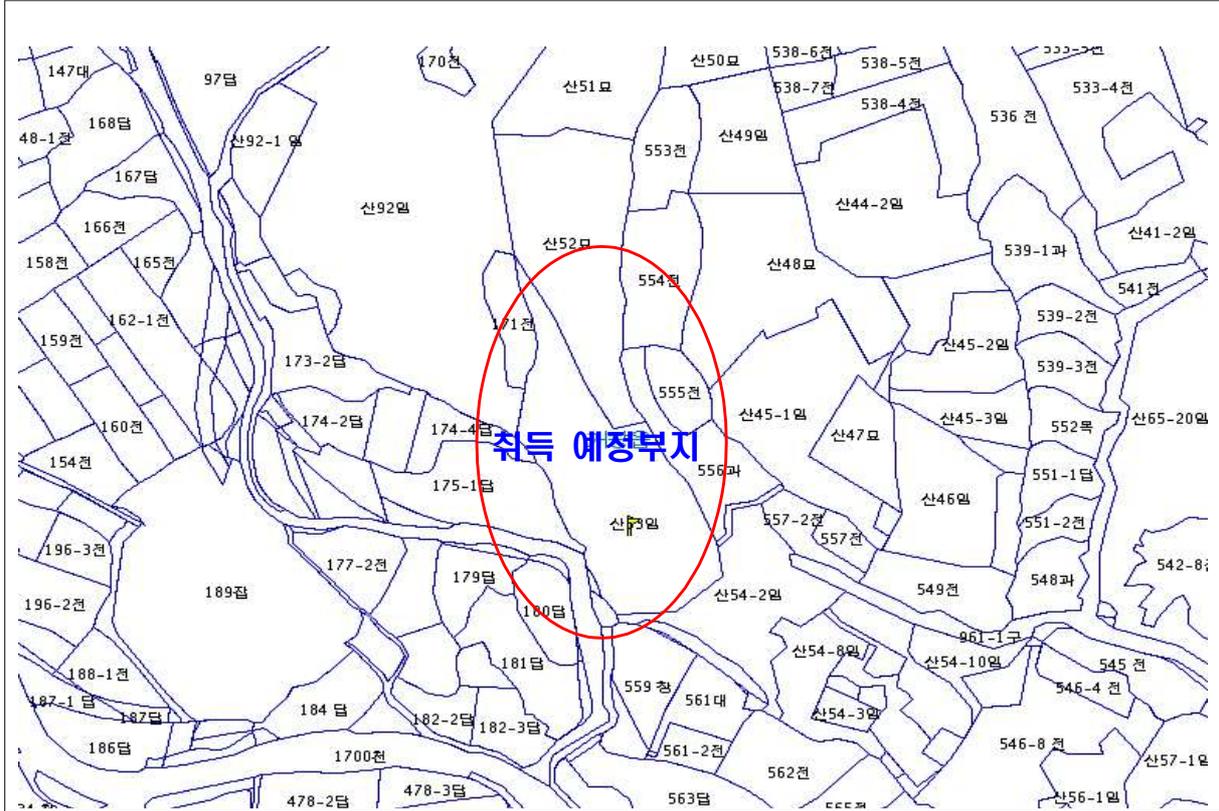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4. 지적도 및 위성사진 ⇨ “따로 붙임”

# 위치도 및 위성사진

## ■ 위치도 (대동리 산53)



## ■ 위성사진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9조(교환)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

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44조(교환)

-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